

6)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299명 (6급 89명, 7급 150명, 8급 6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7)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114명 (6급 34명, 7급 58명, 8급 22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8)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85명 (7급 28명, 8급 28명, 9급 29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9)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68명 (6급 21명, 7급 32명, 8급 15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0)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33명 (6급 10명, 7급 16명, 8급 7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중증장애인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조직 및 정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노동시장 조사·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 증진 관련 정책 수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청년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5명(7급 28명, 8급 28명, 9급 29명) 및 사업체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1명(6급 31명, 7급 48명, 8급 22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558호, 2020. 3.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직업능력정책국 및 근로감독정책단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83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1.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2.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 가. 영 제29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 나. 영 제29조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3. 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영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영 제70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을 말한다.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를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영 제95조의2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영 제95조의2”를 “영 제95조의2제1항”으로, “1부 및 둘째 이상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1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영 제95조의2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별지 제5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령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기간 중 이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뒤쪽의 공지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4일

1.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2. 신청내용

① 급여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③ 대상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父)또는 모(母)가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어 이번 육아휴직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까?	[]예 []아니오
④ ③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둘째, 셋째 또는 넷째 등)의 자녀에 해당합니까?	[]예 []아니오
⑤ 신청인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입니까?	[]예 []아니오

3. 확인사항

⑥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급여를 받은 기간: 부터 까지, 금액: 원), []아니오
⑦ 급여 신청기간 중에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 []조기복직 또는 []퇴사: []예 []아니오, 조기복직일 또는 퇴사일: · []취직 또는 []창업: []예 []아니오, 취직일 또는 창업일: · 소득(예정)액: 원(취직 또는 창업을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⑧ 배우자가 대상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부터 까지), []아니오
⑨ 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서명 및 날인

「고용보험법」 제70조 또는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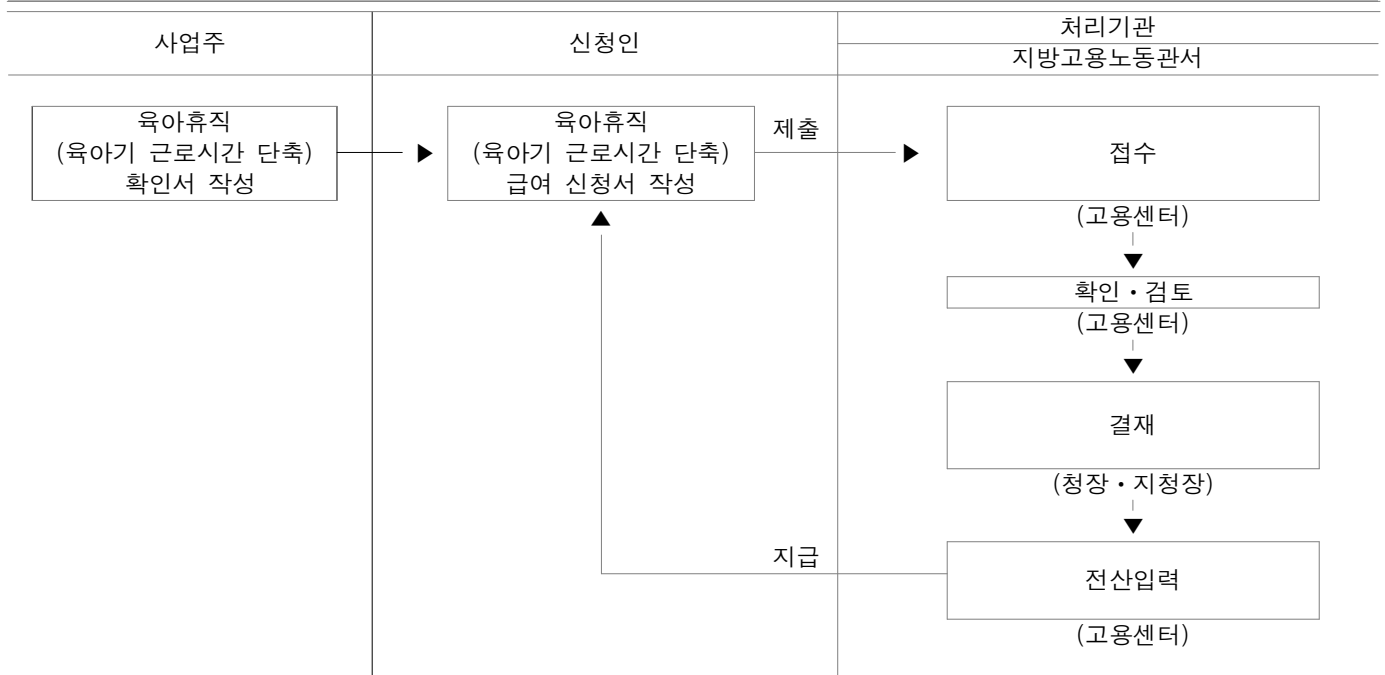
공지사항

1.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25%)는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란에는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2. ②란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③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4. ⑤란은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5. ⑥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은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
6. ⑦란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중 신고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보다 조기에 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경우에 적습니다.
7. ⑧란은 신청인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8. ⑤란, ⑥란, ⑦란 및 ⑧란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수급한 급여액을 반환해야 하고,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⑨란에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의 경우 등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593호, 2020. 3. 31. 공포, 2020. 3. 3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1개월분만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경보 발령을 추가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여성가족부령 제149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65”를 “268”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59”를 “262”로 하며, 일반직 계 “255”를 “258”로 하고,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1”을 “33”으로,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0”을 “21”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67”을 “270”으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61”을 “264”로 하며, 일반직 계 “257”을 “26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4”를 “35”로,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7”을 “19”로 한다.

여성가족부령 제132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여성가족부령 제132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6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명, 운전주사보 1명)은 2022년 8월 10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8월 1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